공 고

◎ 평택해양경찰서 제2025-07호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4일

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장인

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

– 다 음 –

○ 지정사유: 익수(사망)·고립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 목적

○ 소 재 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인근 갯벌 및 해상

○ 지 정 일: 2025. 11. 14.(금)

○ 기 간: 연중

○ 통제시간: 야간(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)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

○ 대 상: 모든 사람(단순 출입 포함, 단, 승선원 제외)

○ 과 태 료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
○ 범 위

① 북위 37° 20′ 52″, 동경 126° 55′ 06″ ② 북위 37° 19′ 76″, 동경 126° 54′ 84″
③ 북위 37° 18′ 85″, 동경 126° 53′ 70″ ④ 북위 37° 19′ 76″, 동경 126° 52′ 53″
⑤ 북위 37° 20′ 62″, 동경 126° 52′ 81″ ⑥ 북위 37° 20′ 69″, 동경 126° 53′ 96″

위 각 호(① ~ ⑥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

